

#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470
------------	-----

제출연월일 : 2009. 4. 27.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향상을 통하여 「문화 창조도시 대전」을 구현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인 대전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대전문화재단의 법인격과 사업을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대전문화재단 정관의 기재사항과 변경 및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대전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조성 및 기금의 관리 · 조성 ·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라. 대전문화재단의 재정지원 및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대전문화재단의 감독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문화예술진흥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예정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합의
- 라. 기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 · 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9. 3. 14. ~ 4. 2. / 접수의견 7건(반영 2건, 미 반영 5건, 별첨)

##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하여 대전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 · 보급 · 활동의 지원사업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문 및 교육·연구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6.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사업
7.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해산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임원) ①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 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기금의 용도) 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연시설의 우선 임대) 시장은 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 요구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①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시장은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법인

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재단의 설립비용은 대전광역시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6조에 따른 대전문화재단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대전문화재단기금 설치 후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 관련법령

##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기간 : 2009.3.14 ~ 4. 2

제출자	의견요지	주관부서 의견	반영여부
최 남 인 (한국예총 대전연합회장)	○ 지역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의 명칭(대전문화재단 또는 대전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	○ 시민공청회 개최 의견수렴 : 4.16 '예술'이라는 제한적 범위보다는 '문화'라는 포괄적 영역으로 명칭 사용, 사업영역의 확장가능성 등을 감안 '문화재단' 바람직	긍정검토
"	○ 재단설립 조례안의 설립목적 (제1조)에 대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목적으로 출 필요	○ 예고안대로 추진 바람직	미반영 검토
"	○ 제3조(사업)은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 할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인 사업영역 개발 필요	○ 운영하면서 보완검토	"
"	○ 임원의 임면 및 직무, 이사회 구성 및 이사장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 필요	○ 정관에 명시 바람직	"
"	○ 기금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별도의 운영비 지원방안 명시 필요	○ 시 재정여건상 비현실적으로 운영규정에 명시 바람직	"
"	○ 기금용도 사용의 적법성을 위해 제9조(기금의용도)②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불가 문구 삽입 필요	○ 제9조 ①항에 기명시 (제3조 ①항 8호와 연계)	"
"	○ 시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필요	○ 정관 제·개정사항 의회제출 검토	긍정검토